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중 “9인 이상”을 “9인 이상 50인 이내”로 “7인 이상”을 “7인 이상 25인 이내”로 “3인 이상”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제6장 제목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3조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에 제1항제4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최고층수는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중 “9인 이상”을 “9인 이상 50인 이내”로 “7인 이상”을 “7인 이상 25인 이내”로 “3인 이상”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2호의 건축(2)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9조제1항제4호의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심의사, 야간경관조명의 계획 및 설치 등에 관한 자문

2. 구위원회 심의대상

제9조제1항제1호중 “가·나·라·사목”을 “가·나·라·마·사·아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마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동조제3항표의 용도란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기타란중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기존재래시장”을 “기존재래시장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한다.

제24조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중에서 가장 넓은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인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를 “접하는 경우

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제6장 제6조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3조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9
------	-----

2003. 3. .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3. 2. 28(의안번호 159)
- 위원회 회부일자 : 2003. 3. 4
- 상정일자
 -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3.3.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택국장 진철훈)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 1.10) 및 시행규칙(2003. 2.15)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2002. 3. 25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일치하도록 결산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임